

## 논문 작성 및 투고 요령

### I. 논문작성

1.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완성된 파일로 제출한다.
2. 논문의 제목과 필자 이름 다음에 국문초록(10줄 내외)과 주제어를 작성한다.
3. 논문의 끝에 ( ) 내에 발표일과 투고일(본 연구회에서 발표하지 않는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투고일만)을 기재하고, 이어서 참고문헌 목록을 국내문헌(가나다 순)과 외국문헌(알파벳 순)의 순서로 작성한다.
4. 위 기재에 이어서 면을 달리하여 외국어초록과 해당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
5. 목차는 I. 1. (1) 1) 가. 의 순서로 한다.
6. 본문과 각주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팔호 속에 표기한다.  
예) 한국(韓國)
7. 각주에서의 출처인용은 아래의 방식에 따른다.
  -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순서: 저자(필자)성명, 「논문제목」, 「단행본(논문집)제목」, 정기간행물 호수, 출판사, 출판년도(일본의 昭和 平成은 서기로 표시), 면.  
예) 김치선, 「노동법강의」 제2전정보정판, 박영사, 1990, 309면.  
後藤勝喜, “外國人勞動者と労働關係法の適用”, 「季刊労働法」 제164호, 總合労働研究所, 1992, 23-24면.
  - 2) 구미 외국문헌은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르되 ①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시, ② 출판사 다음에 출판지 표시, ③ p.34, S.34 등은 모두 34면으로 표시한다. 판례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용례에 따른다.  
예) Tiziano Treu, “Labour flexibility i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1, No.4-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497면.

R. A. Hart, *Working time and employment*, Allen & Unwin, Boston, 1987, 111면.

- 3) 문현을 재인용하는 경우 논문은 “앞의 글”, 단행본은 “앞의 책”으로 하고, 앞의 각주와 동일한 문현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글” 또는 “위의 책”으로 하며, 작성논문에서 동일한 저자(필자)의 저서(논문)가 여러 개 인용되는 경우에는 저자(필자)이름(출판연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김치선(1990), 앞의 책, 309면.

- 4) 국내 판례의 인용은 판결의 경우 예컨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로 하며, 결정의 경우에는 “선고”를 빼고 “판결” 대신에 “결정”으로 표기한다.

8. 법령명은 「 」 또는 ‘ ’ 안에 공포되는 법령의 표기 방식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 표기하고, 제47조 제1항 등 제, 항을 꼭 표시하며, 법문의 내용 인용은 “ ”으로 한다.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 II. 논문투고 방법과 절차

1. 투고대상이 되는 논문은 본 연구회가 개최하는 매월 정기세미나에서 발표 · 토론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 회원 또는 비회원이 정기세미나에서 발표 · 토론하지 아니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필자는 위의 논문작성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논문을 아래의 제출처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전자우편 제출 가능).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논문 제출처: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http://www.snull.me>)

주소 / 06566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광로 16 3층

전화 / 02)591-2386

편집위원 간사 E-mail / J.Shim@sogang.ac.kr

5. 투고 시에는 필자의 영문·한자 성명과 소속기관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논문제목의 외국어 표기를 하여야 한다.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저자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공동저자의 성명을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 III. 논문심사의 절차 및 기준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회 회원 중에서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가 결정한 경우에는 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본 연구회의 「학술지편집·간행 규정」 별지 서식 2에 따라 통지하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학술지편집·간행규정」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제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중 1인의 '개재 불가' 또는 3인의 '수정 요'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를 개재하지 아니한다.
4. 심사위원 중 2인이 '수정 요'의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재 여부를 결정한다.